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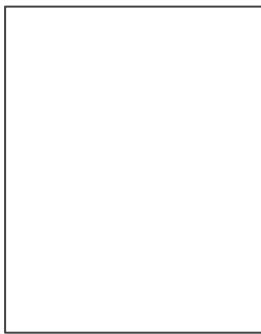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

1. 서론

최근 수년간의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통계를 보면 질병 유소건자가 급격하게 증가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988-95년까지의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를 보면 <표 1>에서와 같이 직업병 유소건건수는 연차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일반질병 유소건건수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로 특히 1995년에는 유소건율이 5.42%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근로자의 일반질병 및 작업관련성 질병의 예방과 사후관리는 산업보건분야에 있어서도 새로운 과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선진공업국의 경우 이러한 건강문제의 예방과 관리를 위해 80년대부터 종합적인 건강증진사업을 다양하게 전개하고 있다.

건강증진에 대한 세계보건기구(WHO)의 활동으로는 1986년 건강증진에 관한 국제회의를 오타와에서 개최하여 건강증진을 위한 현장에서 “건강은 사회, 경제 및 개인의 발전에 있어서 소중한 자원이 되며, 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된다”고 공포하고, “건강증진활동은 건강을 형성하는 여러 가지 조건을 건강에 유익하게 만들어 가고 바꾸어 나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할



李 京 南

한국산업안전공단
산업보건지도국장

것"이라고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1987년에 '근로현
 장의 건강증진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이 위원회에서
 사업장에 건강증진 지침과 건강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권고를
 작성하였다. 1988년에 이 위원회에서 공포한 내용에서는 "사업
 장에서의 건강증진은 아직도 발전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건강증진프로그램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개선하는 잠재능력이 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사업장에서의
 건강증진은 아직도
 발전의 초기 단계에
 불과하지만
 건강증진프로그램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 나아가서
 지역사회의 건강을
 개선하는
 잠재능력이 있다.

표 1.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의 연도별 추이(1988~1995)

구 분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수진자수	3,279,490	3,467,135	3,529,516	3,434,919	3,550,219	3,731,346	3,486,092	3,503,136
일반질병 유소견건수 (유소견률)	77,856 (2.37)	78,891 (2.28)	80,042 (2.27)	110,779 (3.21)	134,485 (3.79)	157,624 (4.23)	159,899 (4.59)	189,737 (5.42)
직업병 유소견건수 (유소견률)	8,408 (0.26)	7,568 (0.22)	7,742 (0.22)	7,187 (0.21)	5,942 (0.17)	4,346 (0.1)	3,084 (0.09)	3,224 (0.09)

주: 유소견율 = 발견된 유소견건수 ÷ 수진자수 × 100
 자료: 노동부, 『건강진단 결과 분석』, 각년도.

미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정부차원에서 사업장 근로자 건강
 증진사업이 권장되었으며, 1990년대에는 보건성에서 전국민을
 대상으로 'Healthy People 2000'이라는 캠페인 프레이즈를 내걸고
 건강증진(Health Promotion), 건강보호(Health Protection), 질병예
 방(Preventive Services)의 3대 전략을 수립 추진하여 많은 성과를
 올리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1970년대 후반
 부터 중·고령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Silver Health Plan'을
 추진하다가 1988년부터는 'Total Health Promotion'으로 전환하여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의 일환으로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에 기업
 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
 다. 이와 같은 각국의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은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관리가 직업병 예방이라는 소극적인 대응만으로는 근로자
 건강보호 및 관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대응책
 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업지침의 개발, 사업추진 인력의 교육·훈련, 자료의 개발·보급, 사업장의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980년대 후반부터 대기업을 중심으로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 국한되고 있는 초기단계에 있으며, 1995년 9월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시행되어 앞으로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1992년에 근로자 건강증진 담당부서를 설치하고 일부 사업장에 대한 시범사업을 비롯한 몇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의 건강증진실천운동 사업성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방향

가. 건강증진사업 추진체계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접근 전략으로는 먼저 사업추진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정부차원에서는 (그림 1)에서와 같이 건강증진사업에서 필요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지침개발, 사업추진 인력의 교육·훈련, 자료의 개발·보급, 사업장의 기술지원 등을 추진하도록 한다.

사업장에서의 추진체계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총괄책임자로 기능하며, 보건관리자는 건강증진사업의 실무관리자로서의 기획 및 실시기능을 하도록 하고, 사업장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회 등의 노·사 대표조직을 건강증진사업의 의사결정기구로 활용하는 건강증진사업의 실시체계를 설립하고 사내관련 인력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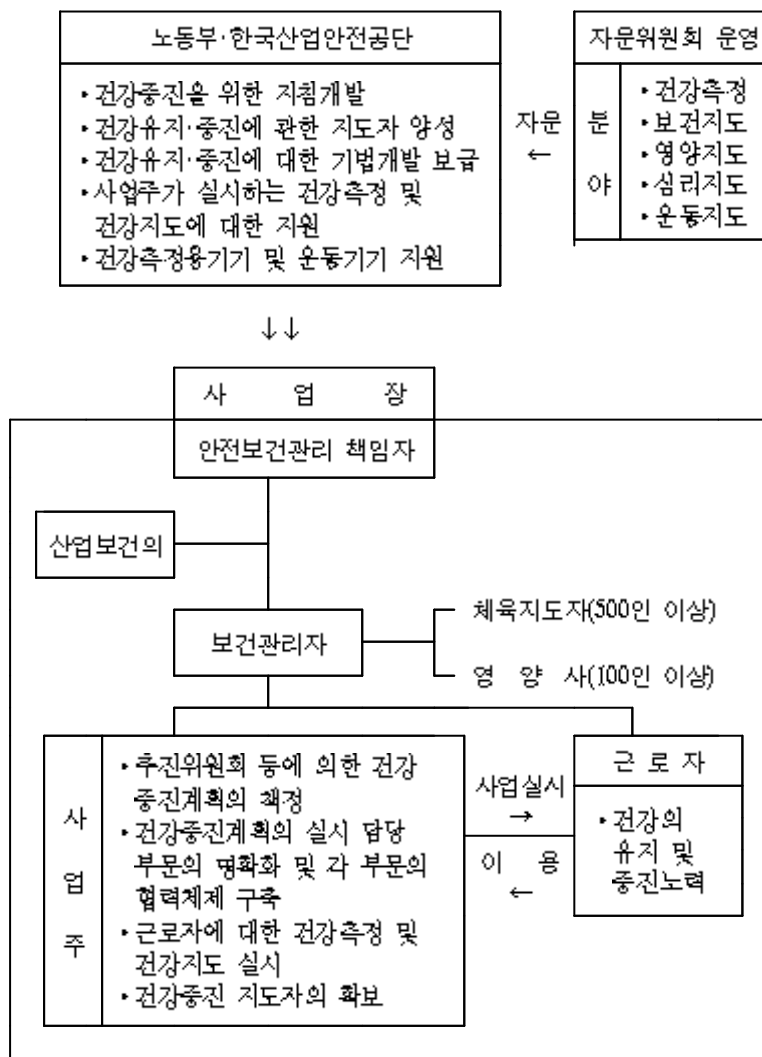
나. 건강증진사업 내용

건강증진사업에 적용할 구체적 내용은 지금까지의 근로자 건강관리가 건강진단을 주축으로 건강장애와 질병의 유무에 대한 확인과 질병 유소견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나, 건강증진사업에서는 건강관리대상의 범위를 건

강진단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정된 대부분의 근로자에게도 그들의 건강수준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다 향상된 건강으로 질 높은 근로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전체 근로자의 지도와 상담 실시 등의 내용을 강화한다.

건강증진사업에서는 건강관리대상의 범위를 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다 향상된 건강으로 질 높은 근로생활을 영위해 갈 수 있도록 전체 근로자의 지도와 상담 실시 등의 내용을 강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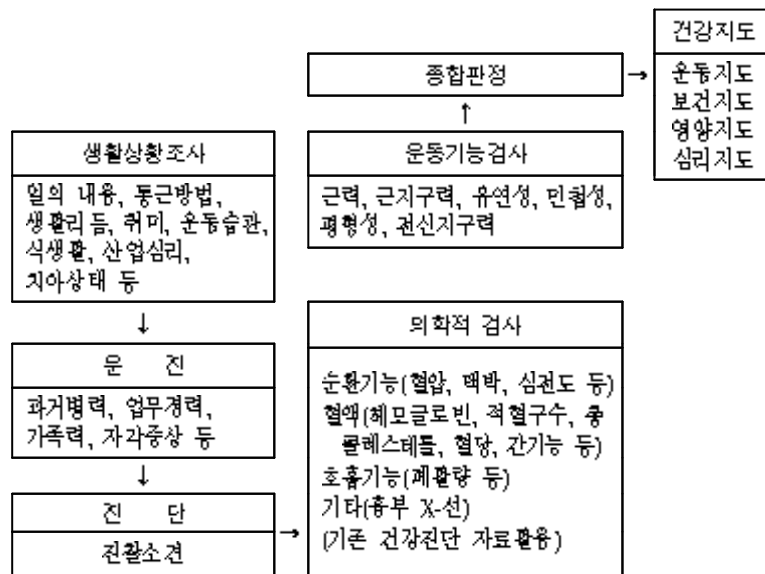
그림 1.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의 추진체계



근로자 개인의 건강측정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집단의 주된 건강 문제를 파악하고,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사업주의 지원하에 추진토록 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이러한 근로자 건강상태의 측정을 위하여 현행 건강진단에서 추가하여 조사되어야 할 항목으로는 (그림 2와 같이 근로자의 생활상황 및 과거병력, 가족병력, 자각증상 등의 내용을 추가하여 건강진단시 시행되는 의학적 검사와 진단, 기초체력측정을 위한 운동기능검사를 병행하여 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종합적인 측정을 한 후 개인별로 필요한 건강지도를 실시토록 한다. 또한 사업장에서의 사업전개는 근로자 개인의 건강측정결과를 토대로 근로자 집단의 주된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건강위험요인 별로 대상자를 선정,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사업을 사업주의 지원하에 추진토록 하고 근로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한다.

그림 2. 건강측정을 위한 조사내용



다. 건강증진사업 추진인력

계속적이고 계획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는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증진을 추진하기 위한 지도인력의 확보와 분야별 전문인력의 명확한 업무수행이 필요하다. 현재 사업장 건강증진사업 추진인력으로는 사업장의 보건관리를 맡고 있는 보건관리자를

주축으로 산업보건의, 영양사, 체육지도자, 상담요원 등을 사업장에 활용할 수 있으나 이는 사업장의 업종, 규모에 따라 선임상태가 각기 달리 적용되므로 건강증진사업을 시작하는 현단계에서는 보건관리자가 주축이 되어 관련 인력을 사업장내에서 확보하거나 사내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사회 관련기관을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유도한다.

라. 사업장 건강증진사업 추진의 법적근거 마련

근로자 건강진단 결과 질병유소건율의 급격한 증가,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확대에 의한 산재보상금의 증가, 아울러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업종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추진주체에 관한 관련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정부의 책무)에서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달성을 위한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집행·조정 및 안전보건의식의 홍보·교육, 안전보건을 위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근로자의 위험 및 건강장해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이행할 책무를, 또 이들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 필요시 공단등 관련기관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에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1997년 5월)하여 정부가 적극적으로 건강증진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 1) 추진인력 및 체제에 관한 법령: 제13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제16조(보건관리자), 제19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사업장 건강증진 추진체계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제13조에서 사업주는 안전보건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고, 제16조에는 보건관리를 위한 보건관리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으며, 제17조에 보건관리자의 직무에 근로자의 건강상담·보건교육 및 건강증진 지도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 제19조에는 근로자, 사용자가 동수로 구성된 산업안전보

현재 일부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증진사업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여 대기업뿐만 아니라 업종이나 규모를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한다.

정부에서는 사업장 건강증진 추진 요령을 사업장 규모 및 사업별로 제시하여 표준화된 건강증진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건위원회(또는 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건강증진에 관한 구체적인 직무나 책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여 사업주의 주관 하에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이 추진되도록 한다. 특히 안전보건관리규정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정책의 근간이 되는 것이므로 동규정에 노·사 합의에 의한 자사의 특정한 건강증진 사업체계, 내용, 방법 등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추진내용에 관한 관련 법령: 제20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제31조(안전·보건교육)

사업장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내용과 관련된 법령으로는 제20조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에 관한 규정과 제31조의 안전·보건교육실시 등의 규정이 있으나, 근로자 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이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하여 자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산업안전보건법 외에도 국민건강증진법에서는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사업과 아울러 500인 이상 사업장의 보건교육실시 등 건강증진활동을 규정하고 있으며, 중소기업근로자 복지진흥법에도 근로자의 건강유지에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들 법령과 연계·추진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정부에서는 사업장 건강증진 추진 요령을 사업장 규모 및 사업별로 제시하여 표준화된 건강증진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 건강증진 사업전개 전문인력 구성

사업장 건강증진활동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는 건강증진사업에 관여하는 전문인력들이 다기능적으로 연계·추진되어야 하므로 건강증진사업이 초기단계에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는 전문인력양성이 시급하며 다음과 같은 양성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1) 전문과정 개설

사업장 건강증진활동 추진시 실행관리자로 기능하여야 할 보건관리자 또는 관련인력의 건강증진활동 수행능력(근로자의 건

강측정 결과를 토대로 개인별 지도를 실시하거나 필요시 지도를 실시하는 인력에 대해 지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배양을 위한 양성과정과 사업장내에서 근로자들의 리더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중진활동 실천지도자의 양성이 필요한 바, 이를 위한 과정은 현재 안전공단교육원에서 1996년도 전문과정(28시간)을 개설하여 184명에 대한 양성교육을 이수시켰고, 또한 관련전문기관에 동 과정을 개설하여 지도자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2) 사업장의 기존 인력활용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행 각 제도에서 건강중진 분야에 참여하여야 할 인력 즉, 영양사, 체육지도자 등을 활용, 사업에 연계시키는 방안으로 관련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의 하에 양성과정을 마련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인력들은 팀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자기 기준을 마련하여 역할을 분명히 하도록 한다.

바. 건강증진기법 개발 보급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직업성, 비직업성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건강중진을 추진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법들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근로자 건강평가를 위한 측정도구의 개발
- 근로자 건강관리지도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개인별 건강관리 소프트웨어 개발
- 사업장의 업종 및 규모에 적절한 기법 및 자료개발
- 건강중진 활동분야별(운동지도, 영양지도, 정신보건, 중·고령자 건강관리 등) 활용기법 개발·보급
- 건강중진사업 효과측정기법 등

사. 전문기관 및 관련기관의 건강증진사업 보장

건강중진사업이 사업장 보건관리의 일환으로 추진되려면 사업장 안전보건기술 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 및 관련기

사업장의 업종과 근로자의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직업성, 비직업성 건강문제를 중심으로 건강증진을 추진할 수 있는 표준화된 기법들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때까지 건강측정용 장비 및 기술을 지원하여 사업장 기반을 조성토록 지원한다.

관은 다음과 같은 역할의 강화가 요구된다.

- 사업자의 건강증진활동 정착유도: 건강증진사업을 사업주가 수행하는 건강관리의 적극적인 추진과 근로자의 자율적인 노력이 정착되도록 한다.
 - 노·사대표 각종 교육시 홍보기회 확대
 - 안전보건관련 보도매체, 간행물을 통한 홍보활동 확대
 - 건강증진사업의 우수사례 발표 및 정보교류 기회 제공
 - 건강증진사업 실시 사업장 확대운영 등
- 전문지도기관에 건강증진 전문인력 배치: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을 지도·지원할 수 있는 인력을 배치하여 전문적 지원체계를 구비한다.
- 건강측정용 장비보급 및 기술지도 마련: 건강증진활동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때까지 건강측정용 장비 및 기술을 지원하여 사업장 기반을 조성토록 지원한다.

아. 사업장 지원 및 인센티브제

현재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업장에서의 건강증진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법정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것과 아울러 자율적으로 사업장에 대하여 산재예방에 관한 정부포상 추진시 우선 추천, 참여 사업장 기술자문 및 교육훈련 등 요구시 적극협조 등의 제도적 지원이 요구된다.

3. 결 론

이상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사업장에서의 근로자 건강증진사업은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대응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일부 대기업에 국한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의 체계적 진행이 필요로 됨에 따라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을 위하여 사업장의 근로자 건강관리제도 및 실태분석, 선진외국의 제도조사 및 현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진행중인 건강증진 실천운동 전개사업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실태조사 및 관련 자료부족 등으로 국민 건강증진사업, 근로자 건강진단제도, 의료보험 부분의 예방사업 등과의 체계적인 연계·역할분담 등에서 단계적인 연구가 필요로 되고 있음을 밝히며 향후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장에 노·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둘째, 근로자의 건강상태를 보다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과 내용의 보완이 요구된다.

셋째,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사업장에서 건강증진사업의 보다 더 효과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제도적 지원과 각종 인센티브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향후 사업장 건강증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장에 노·사가 적극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조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